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안연월일 : 2006. 2. .
제안자 : 신길철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용어를 2005. 12. 22자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으로 혁신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안 제3조제②항제2호가목)
- 나.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안 제3조제②항제2호나목)
- 다.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에“혁신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안 제3조제②항제2호마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행정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기획재정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②항제2호가목 중 “행정관리국”을“행정국”으로 한다.

제3조제②항제2호나목 중 “재무국”을“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3조제②항제2호마목에 “혁신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운영위원회</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2. 행정위원회</p> <p>가. <u>행정관리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u>재무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생략)</p> <p>라. (생략)</p> <p>마. <u>신설</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운영위원회</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2. 행정위원회</p> <p>가. <u>행정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u>기획재정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생략)</p> <p>라. (생략)</p> <p>마. <u>혁신기획단</u> 소관에 속하는 사항</p>